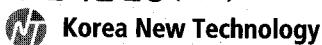


신기술(NT) · 우수품질(EM) · 환경설비품질(EEC) 인증제도 안내

산자부 기술표준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술개발 의욕 고취를 위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각종 홍보, 판로,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시험·분석 수수료 포함)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며, 기술표준원 이외 기관에서 시험·분석 의뢰 시는 신청자가 해당금액을 부담한다. 이러한 신기술(NT) · 우수품질(EM) · 환경설비품질(EEC) 인증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자 하며, 환경관련 기업체에서도 인증제도 활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신기술인증(NT)



● 신기술 인증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제품의 품질, 성능 및 제조공정을 평가하여 신기술 및 제품에 대해서는 신기술마크를 부여하고 홍보, 판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관련법령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 인증대상(자격)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로서 실용화한지 3년 이내의 제조기술 또는 상품화한지 3년 이내의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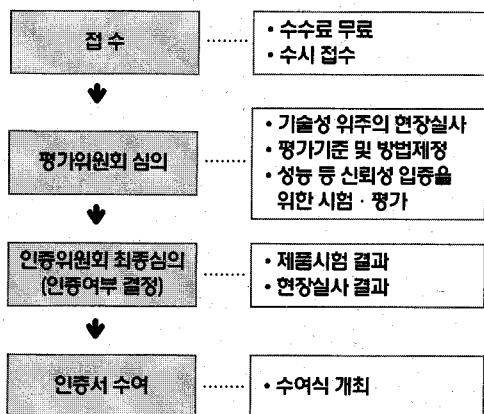
- 단, 개념적 기술, 당해기업 생산라인에만 사용되는 범용성 없는 제조기술, 이미 보편화된 기술, 식품, 의약품 및 전문의료기기, 건설 시공기술,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자동차 등의 완성품(다만, 부품은 해당)에 관련된 기술은 제외함.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평가절차 및 과정

▶ 인증절차



* 신청서 양식 : <http://emnt.ats.go.kr>에서 다운로드

2. 우수품질인증(EM)



● 우수품질인증이란

국내에서 3년 이내에 개발된 기계류·부품·소재(이하 “자본재”라 한다)의 품질, 성능 및 제조공정을 시험·분석·평가하여 국외제품 및 동종제품 대비 탁월하게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우수품질인증마크를 부

여하고, 우수품질인증 제품에 대하여 홍보, 판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관련법령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 인증대상(자격)

- 국내에서 3년 이내에 개발된 실용화(상품화)된 자본 재로서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부품·소재와 동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기계류
- 단, 플랜트 개념의 설비 또는 장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설비 품질인증 대상 품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대상 품목 및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제외함.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평가절차 및 과정 : NT인증 과정과 유사

3. 환경설비 품질인증(EEC)

Environmental Equipment Certification

● 환경설비 품질인증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거나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하게 소화·개량한 기술 또는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우수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환경설비에 대하여 기술성,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홍보, 판로개척,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12조

● 인증대상(자격)

- 국내의 설계·제조기술에 의해 핵심기술을 개발·개선한 환경설비(파이롯트 플랜트 포함)
- 단, 신청일 당시 5년 이전에 개발된 설비, 국내의 설계능력 없이 외국의 기술 도입 또는 기술제휴에 의해 단순 제조된 설비는 제외함.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평가절차 및 과정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NT인증 과정과 유사함

4. 정부 지원 시책

● 공공기관의 인증제품 20%이상 의무구매 제도화

2005년부터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시행(EEC인증 제외)

● 우선구매 지원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에 의한 우선구매를 할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인증일로부터 2년간)

-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심사 시 우대(EEC인증 제외)

● 기술우대보증

기술신용·기술평가 보증 시 절차간 소화 및 보증한도 우대보증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규정

● 하자보증 등 보증종류 확대

인증제품에 대한 보증종류 확대 적용

-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하자보증, 지급보증

- 일반보증기관의 1/3 수수료

※ 취급기관 : 기계공제조합

● 산업체산권 우선심사

특히, 실용신안, 의장등록 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대상

- 인증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만 해당

● 판로개척 및 홍보 등

- 국내·외 전문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시장개척

- 카다로그 제작 배포

※ 배포처 : 해외 KOTRA 무역관 및 조달청

- 기술개발지원자금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가점부여)

- 개발유공자 및 기업 정부포상

※ 기타 인증 제도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emnt.ats.go.kr>)를 참고하시거나 기술표준원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M·EEC인증분야 : 자본재표준과 : ☎ (02)509-7281~5 /

NT인증분야 : 에너지자원표준과 ☎ (02)509-7277~80)